

「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」 대전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

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돌봄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
대전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27일

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기관명	채용분야	인원	담당업무	비고
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	운전원 (파트타임)	2명	• 교통약자 차량운행 업무	
	사무원	2명	• 이동지원 행정 업무	
	상담원	2명	• 이동지원 차량배차 관련 업무	

※ 각 채용공고 및 분야 중복지원 불가

2.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
가. 공통 자격기준

- 18세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년(만 60세)에 달하지 아니한 자
- 아래 ① ~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- ※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.
 - ②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
 - ※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.
 - 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.

나. 분야별 자격기준

채용분야	내용
운전원 (파트타임)	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최근 3년 이내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(재발급 포함) ②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경력자 ③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※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,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름

채용분야	내용
	④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(※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)를 취득한 자로 택시운전 자격 혹은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한 자 ⑤ 20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-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-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거나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
사무원	■ 아래 ① ~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자 ②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
상담원	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자 ② 콜센터 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워드프로세서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자

<전형별 가점사항>

구분	가점대상자	가산점수	증빙서류
취업지원 대상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각 전형별 5~10점 (해당 법률에서정하는 가점)	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해당하는 장애인	5점	장애인증명서

※ 가점이 중복될 경우,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(중복적용 불가).

※ 가점은 전형별 과락점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, 서류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 필요

※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(근거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항)

3. 근로조건

구분	내 용
운전원	• 계약기간 : 계약일 ~ 2022. 12. 31. • 근무장소 : 대전교통약자지원센터(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2층) • 근무시간 : 근무표에 의거 별도 안내 - 야간(22:00~익일 07:00) 및 주간, 공휴일 근무가능 • 급여수준 : 월 1,095,290원(사회서비스원 관련 규정 및 내규 준용) • 복리후생 : 사회서비스원 관련 규정 및 내규 준용, 예산범위 내 수당 별도 지급 • 임용시기 : 2022. 7 ~ 8월 중

구분	내 용
사무원	• 계약기간 : 계약일 ~ 2022. 12. 31. • 근무장소 :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(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2층) • 근무시간 : 월~금 / 09:00 ~ 18:00 • 급여수준 : 월 1,914,440원(사회서비스원 관련 규정 및 내규 준용) • 복리후생 : 사회서비스원 관련 규정 및 내규 준용, 예산범위 내 수당 별도 지급 • 임용시기 : 2022. 7 ~ 8월 중
상담원	• 계약기간 : 계약일 ~ 2022. 12. 31. • 근무장소 :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(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2층) • 근무시간 : 근무표에 의거 별도 안내 - 주간: 월~금 / 10:00 ~ 19:00 - 야간: 월~금 / 22:00 ~ 07:00 • 급여수준 : 월 1,914,440원(사회서비스원 관련 규정 및 내규 준용) • 복리후생 : 사회서비스원 관련 규정 및 내규 준용, 예산범위 내 수당 별도 지급 • 임용시기 : 2022. 7 ~ 8월 중

※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.

※ 근무조건 등은 대내·외 환경 변화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4. 전형절차 및 일정

서류전형		면접전형		임용
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	▷	개별/그룹면접	▷ 증빙확인	최종합격자 결정

※ 채용규모, 채용전형, 선발배수 등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구분	일정	비고
채용공고 및 원서접수	6. 27.(월) ~ 7. 7.(목)	
1차전형	서류심사	7. 8.(금)
	결과발표	7. 12.(화)
2차전형	면접심사	7. 13 ~ 14.(수 ~ 목)
	결과발표	7. 19.(화)
최종합격자 서류 제출	7. 20.(수) ~ 7. 22.(금)	
결격사유조회		
신규임용	7 ~ 8월 예정	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

5. 전형방법 및 평가요소

전형	구분	평가배점	평가요소	합격자 결정
1차전형	서류심사	-	공통 및 분야별 자격요건 등 적합여부 심사	적격, 부적격 결정
2차전형	면접심사	100점	전문성(20) 발전성(20) 창의성(20) 윤리관(20) 성실성(20)	면접심사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 순

※ 면접시험 평균 득점이 60점 미만이고, 심사기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중하 이하로 평가한 경우 당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으로 처리(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내규)

※ 동점자의 경우: ①전문성 항목의 면접위원 합산 점수가 높은 자 ②발전성 항목의 면접위원 합산 점수가 높은 자

※ 예비 합격자 제도 운영

- 최종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최종합격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야별 3명의 예비순위를 부여하고, 분야별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 예비후보자 순위별 채용.
- 해당 시설 내 동일 자격기준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예비합격자의 동의가 있을 시, 운용기간 내 최초 응시 분야 외 직무 임용 가능.

6.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
• 공고 및 접수기간

공고 및 접수기간	접수방법
6. 27.(월) ~ 7. 7.(목)	방문 혹은 우편접수: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2층

• 제출서류

구분	대상	제출서류	비고
서류전형	전원	① 입사지원서 1부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가산점 및 동점자 증빙서류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 -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: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/ 장애인: 장애인증명서	
입사서류	면접합격자	공통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(전원) ② 주민등록초본 1부(전원) - 병역사항 및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발급 ③ 일반채용신체검사서 1부(전원) *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 ※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 가능함. 단,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대상의 경우 감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관련 내용 추가 제출 필요함(공단 홈페이지 내 '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' 발급). ④ 증명사진-JPG 파일(전원) ⑤ 자격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 -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⑥ 경력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	*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필요
	운전원	① 운전경력증명서(최근5년) 1부(운전원 해당) - 면허 취득일 확인 가능한 기간(운전원 해당) ② 면허정지 등 처분사항확인서(최근5년) 1부(운전원 해당) ③ 정밀검사서(최근3년) 1부(운전원 해당) ④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증 1부(운전원 해당자에 한함)	

구분	대상	제출서류		비고
			⑤ 버스운전자 교육과정 이수증 1부(운전원 해당자에 한함) ⑥ 소속기관장 추천서(운전원 해당자에 한함)	
		사무원	① 최종학력증명서(사무원 해당)	

※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응시원서 접수 받지 않음

※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기재할 수 없으며, 기재 시에도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

※ 제출마감일 이전 3개월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

※ 서류전형 기재사항은 향후 서면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함.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, 착오로 작성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자동 탈락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<응시자격 제한사항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.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1.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1)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- 2)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12.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.
13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14. 경력, 학력 및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자
15.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
16.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제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■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응시자 해당

<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)>

-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 <개정 2016. 1. 6., 2016. 12. 2.>
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
 - 나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, 제5조의8,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
 - 다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 - 라. 「형법」 제332조(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,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, 제363조에 따른 죄
 2.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3.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 - 나. 「도로교통법」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 - 다.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(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 4.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-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6. 12. 2.>
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·죄질,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
 -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(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에 따른 죄
 - 다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죄
 2.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< 유 의 사 항 >

- 1)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2) 채용인원 및 단계별 전형 내용, 일정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내용은 해당 시험 일 전에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. ※ **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**
- 3) 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지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4)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상에 출신학교,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, 연령 등 개인 인적사항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5) 응시원서 및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, 모집분야 관련에 한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.
- 6) 응시원서 기재 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책임으로 하며,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으로 허위 내용 확인 시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7) 최종합격자 통보 후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(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제외)할 수 있으며 반환 요청 시 사회서비스원(채용기관)이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(우편 또는 직접전달)처리하고 반환 청구기간 내 반환요청이 없는 채용서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보안폐기 합니다. ※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, 시행령 제4조 근거 / [붙임7]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참조
- 8)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며, 채용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 단계별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(recruit@dj.pass.or.kr) 이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[붙임8] 양식 참조
- 9) 시험 부정행위, 비위 채용(인사청탁, 허위 사실판명 등)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채용시험 지원을 제한합니다. (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)
- 10) **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접수 중인 타 채용공고 및 채용분야에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**
- 11)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12) **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**
 -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완치되지 않은 지원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
 - 면접시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(미착용시 응시 제한)
 - ※ 단, 감독관이 지원자 확인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해야 함
- 13) 기타사항은 대전광역시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 사업담당자(042-612-1004) 혹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채용담당자(042-331-898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